##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29

발의연월일: 2025. 3. 7.

발 의 자:문금주・이정문・김승원

허성무 · 주철현 · 이개호

서삼석 • 조계원 • 이광희

이원택 • 정진욱 • 김 윤

이용선 · 김남근 · 김문수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지의 무분별한 투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을 방지하고, 농업과 어업의 본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활용하거나 전용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농지의 본래 목적 보존과 공공적 활용이라는 중요한 취지를 담고 있으나, 최근 농어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변 화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에너지 구조 전환이 국 가적 과제로 부상하였고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행법 상 제한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의 유휴 자원과 시설을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이 태양에너지를 활용한 전기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현행법상 부동산업 허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유휴 토지와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며,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 향상을 도모하고자함(안 제19조의5).

#### 법률 제 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9조의5 중 "농지를"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로, "부동산업(단, 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을 "부동산업을"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 해당 농지의 건축물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농업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법인 및 어업법인은 <u>농지를</u> 활	
용 또는 전용하여 「통계법」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	우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의한 <u>부동산업(단, 이 법 제</u>	
2조제8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u>부동산업을</u>
<u>제외한다)을</u> 영위할 수 없다.	<b></b>
<u>&lt;신 설&gt;</u>	1.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
	<u>하는 경우</u>
<u>&lt;신 설&gt;</u>	2. 해당 농지의 건축물에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
	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